

고용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는 고용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모집 하오니,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0. 4. 1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

※ 본 채용은 NCS(국가직무능력표준)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.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·기술·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I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

채용부문	채용인원	담당업무	비고
고용센터 고용서비스 행정지원	5명	직업상담원 운영규정에 따른 직업상담원 직무 지원	직무설명서 참조(별첨1)

II 응시자격

구 분	주 요 내 용
학력, 전공	· 무관
성별, 연령	· 제한 없음
병역	·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* 단,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
우대사항	· 장애인, 저소득층, 취업지원대상자 · 고용센터 근무경력이 있는 자 ·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관련 교육 이수자 · 상담관련 자격보유자,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 보유자
기타	·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· 채용 즉시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함

III 전형절차 및 일정

○ 전형절차

서류전형	·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·부적격 여부 판단 · 서류전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
↓	
면접전형	· 고용서비스 행정지원 담당자의 직업기초능력,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

○ 전형일정

전형일정	일 시	비고
지원서 접수	2020.04.01.(수)~ 2020.04.06.(월) 12:00까지	· 입사지원서,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, 자기소개서 제출 · 채용담당자 이메일(takepark@korea.kr)로만 접수 * '20.4.6(월) 12:00까지 도착분만 유효 · 기타 증빙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0.04.08.(수) 10:00	·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면접전형	2020.04.09.(목) 14:00~, 15:30~	· 포항고용센터 응시자: 14:00 · 경주고용센터 응시자: 15:30
면접전형 합격자 발표	2020.04.10.(금) 14:00	·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채용	2020.04.13.(월)	· 근로계약서 작성 및 부서배치 등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
 ※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결격사유 발생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

IV 우대사항

○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

구 분	우대사항
교육사항	· 고용센터 고용서비스 관련 학교 교과목이나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직업상담교육 (8시간 이상) 이수자 ※ 관련 학교 교과목이란 행정학, 법학, 경영학, 사회학, 사회복지학 교과목을 말함
경력사항	· 고용센터 근무 경력자
자격사항	· 직업상담사 자격증, 기타 상담관련 자격증(교사, 청소년상담사, 직업능력개발교사, 사회복지사, 변호사, 공인노무사 등),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(컴퓨터활용능력, 워드프로세서, 인터넷정보관리사 등) 보유자

	※ 평정 시 상담자격과 컴퓨터활용능력자격(급수·개수 무관) 중복 보유한 자는 상담자격만을 우선하여 반영하고, 상담자격 중 직업상담사 자격과 기타 상담관련 자격을 중복 보유한 자는 직업상담사 자격만을 우선하여 반영
--	--

○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

구 분	우대사항
배점 외 가산점 부여	- 취업지원대상자: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% 또는 5% 부여(10%와 5%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) ☞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▲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▲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▲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▲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▲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- 장애인: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% 부여 - 저소득층: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% 부여 ※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,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

V 접수서류

-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 제출서류를 붙임하며,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

제출 서류	대상
- NCS기반입사지원서,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, 자기소개서 각 1부 ※ 붙임1 서식 활용	원서접수 시 제출
- 주민등록등본 1부 ※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등에 활용	면접 시 제출
고용센터 고용서비스 교육(관련 교과목 또는 직업상담교육) 이수 증명 서류 각 1부(해당자)	
경력증명서 각 1부(해당자)	
상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)	
-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) ※ 정보처리(산업)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, 워드프로세서 등	면접 시 제출

• 장애인 증명서 1부(해당자) ※ 장애인증명서, 복지카드, 상이군경회원증 등	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•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각 1부(해당자) ※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▲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 ▲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 ▲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 ▲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 ▲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•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부(해당자)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【가구원수별 '건강보험료' 납입액(부과액) 상한 (원/월)]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1인가구</th> <th>2인가구</th> <th>3인가구</th> <th>4인가구</th> <th>5인가구</th> <th>6인가구</th> <th>7인가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중위소득 (A)</td> <td>1,757,194</td> <td>2,991,980</td> <td>3,870,577</td> <td>4,749,174</td> <td>5,267,771</td> <td>6,506,368</td> <td>7,389,715</td> </tr> <tr> <td>소득 인정액 (B=A×0.6)</td> <td>1,054,316</td> <td>1,795,188</td> <td>2,322,346</td> <td>2,849,504</td> <td>3,376,663</td> <td>3,903,821</td> <td>4,433,829</td> </tr> <tr> <td>보험료 (B×0.0306)</td> <td>35,161</td> <td>59,870</td> <td>77,450</td> <td>95,031</td> <td>112,612</td> <td>130,192</td> <td>147,868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: 1인 증가시 883,347원씩 증가(예 : 8인가구: 8,276,067원) ※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(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): 한부모가족증명서		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	중위소득 (A)	1,757,194	2,991,980	3,870,577	4,749,174	5,267,771	6,506,368	7,389,715	소득 인정액 (B=A×0.6)	1,054,316	1,795,188	2,322,346	2,849,504	3,376,663	3,903,821	4,433,829	보험료 (B×0.0306)	35,161	59,870	77,450	95,031	112,612	130,192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																									
중위소득 (A)	1,757,194	2,991,980	3,870,577	4,749,174	5,267,771	6,506,368	7,389,715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득 인정액 (B=A×0.6)	1,054,316	1,795,188	2,322,346	2,849,504	3,376,663	3,903,821	4,433,829																									
보험료 (B×0.0306)	35,161	59,870	77,450	95,031	112,612	130,192	147,868																									

*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, 근무기간, 직위, 직급,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

V 근무조건

- 보수수준 : 월 1,795,310원 (급식비 130,000원 별도)
- 근무시간 : 주 5일(월~금), 1일 8시간 (09:00~18:00)
- 계약기간 : 2020.4.13.~2020.9.12.(5개월,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 종료)
- 근무장소 <※ 근무 희망 고용센터 1곳만 지원 가능(중복접수 불가)>

센터명	채용 인원	근무 예정 소재지
포항고용센터	3	경북 포항 북구 중흥로 221
경주고용센터	2	경북 경주 원화로 396

- 업무내용 : 취업지원, 고용보험, 취업성공패키지, 기업지원, 행정업무 등 고용서비스 업무에 대한 지원으로서 부서의 상황에 따라 전보 배치
-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“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”에 따름

VI 기타유의사항

- 응시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, **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간(반환청구기간)**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[별첨 서식]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(최종 채용 합격자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(대구고용노동청)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)하게 됩니다. 채용서류의 **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**이며, 보관기간동안 **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**합니다.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및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경우,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.
- **결격사유(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사항)**
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호 내지 제6의4호 사항
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채용담당자 : ☎ 054-271-6772